

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청렴 수준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02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점수 추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청렴도 점수 추이 >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201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는 금품제공 등의 부패 경험은 개선되었으나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하였습니다.

< 개 선 >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 ▲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 ▲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

< 하 락 >

-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7.38점→6.82점)
- ▲ 조직 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 (8.68점→8.44점)
- ▲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7.72점→7.24점) 등

또한 외부청렴도(8.09점) 및 내부청렴도(7.93점)에 비해 정책고객평가(6.95점)가 낮은 수준으로 연고주의·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각 지수별 점수 비교 >



< 기관유형별 종합 청렴도 >



< 우리공사 청렴도 점수 >

연도	등급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0년	II 등급	8.69	9.09	7.59
2011년	II 등급	8.73	9.24	7.70
2013년	I 등급	8.53	8.71	8.03

※ '10~'11년 청렴도 측정결과 II 등급 달성, '12년도 면제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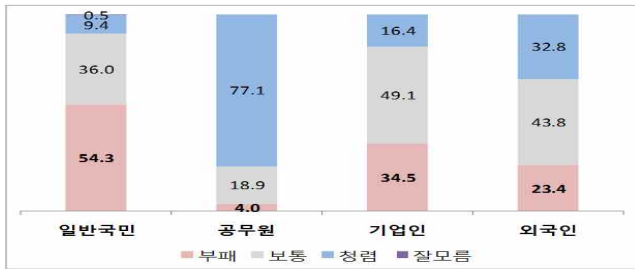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일정

- | | |
|--|---------------------------------|
| ▲ 기관별 측정 대상 업무 검토 : ~ '14. 6월 | ▲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14. 7 ~ 11월 |
| ▲ '14년도 청렴도 측정실시계획 확정·통보 : '14. 6월 (미통보) | ▲ 청렴도 측정실시 : '14. 7 ~ 11월 |
| ▲ 측정대상자 명부수령 및 확인 : '14. 7월 | ▲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활용 : '14. 11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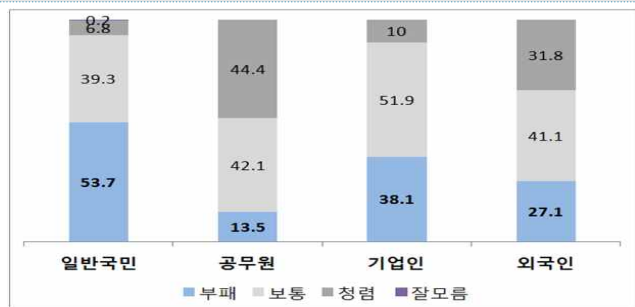
국민의 부패인식 · 경험 조사 결과

'1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 · 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 · 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의 격차(13.5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5.2%), 공무원(42.9%), 기업인(56.6%), 외국인(45.5%), 외국투자기업(49.3%) 모두 ‘우리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부패 발생 주된 원인)

공무원들은 ① 공직내부의 부패유발적 문화 및 관행(28.6%), ② 민원인의 청탁 유혹 등(24.5%), ③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20.9%) 순으로 응답

(직접 경험한 부패행위)

일반국민은 ‘금품수수’(23.1%), 공무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25.0%), 기업인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 · 청탁’(31.3%), 외국인은 ‘접대 · 향응수수’(26.7%)가 많았다는 응답

(정부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기업인(52.9%), 외국인(41.4%), 외국투자기업(33.3%) 모두 ‘정책과정에서 불법 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며, ‘정책의 잦은 변경 · 수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외국투자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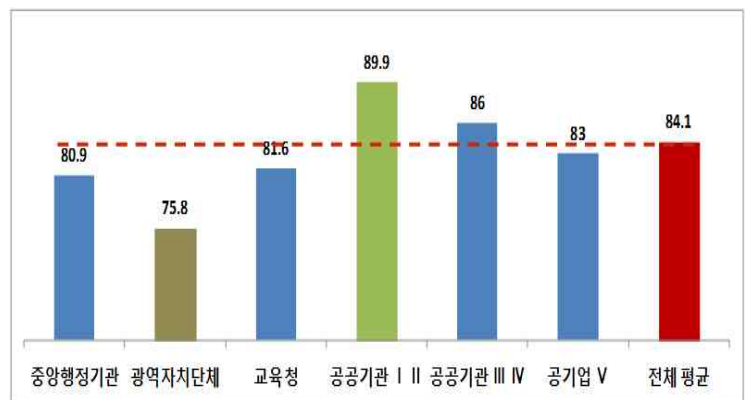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평가부문 중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부문(92.0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았고,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79.3점), ‘청렴도 개선’ 부문(74.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한 반면,

연속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 · 문화 개선 등이 미흡하였습니다.

< 평가부문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평균) >



※ 우리공사는 공공기관 III 그룹에 포함됨.

♣ 청렴메세지 ♣

知足可樂 務貪則憂(지족가락 무탐칙우)

만족을 알면 즐겁고,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있다

- 경행록 -

올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하여

평가체계의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및 사회전반 청렴문화 확산 등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개선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평가 대상기관은 255개 기관으로 평가부문 및 주요평가내용은 8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4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반부패 의지·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등 3개 영역으로 대별, 단위과제는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 여부 및 실제운영 성과 및 효과과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등을 강화하였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평가지표수를 전년보다 다소 확대(40개→44개)하였습니다.

< 평가대상기관 ('14년도 255개) >

구분	'13	'14	증감	비고
중앙행정기관	41	43	+2	신설기관 등 추가
광역자치단체	17	17	-	
기초자치단체	-	24	+24	인구 50만명 이상
교육자치단체	17	17	-	
국·공립대학	10	11	+1	신입생 3,000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140	143	+3	취약기관 추가
합계	225	255	+30	-

반부패·청렴 Day 지정 운영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의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성화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첫 번째 목요일을 『반부패·청렴 DAY』로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 반부패·청렴 Day 추진내용 >

- ▲ 청렴문자 알리미 운영
- ▲ 청렴 실천과제 및 행동강령 바로알기 전파
- ▲ 청렴도 자가진단으로 청렴수준 측정
- ▲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주요내용으로는 임직원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명언, 부패방지 행동사례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청렴문안 등을 선정하여 매월 전파 실시하는 **청렴문자 알리미운영**과 매월 청렴 실천과제를 선정, 이와 관련된 임직원 행동강령과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구성 >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	1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	13.5
부패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1개 단위과제	총점의 10%이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도약을 위하여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등급 도약」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재진단과 청렴수준을 포함한 내·외부환경을 종합 분석하여 공사의 청렴미래를 이끌 새로운 윤리경영의 추진목표와 전략을 도출하고,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 평가결과 미흡·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 윤리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개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36개 세부이행과제를 통해 전사적인 반부패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부패방지 및 제도개선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전파함으로써 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청렴실천과제 및 행동강령 바로알기전파**, 개인의 청렴수준을 스스로 진단하여 미흡한 분야를 개선하고, 윤리의식 자가진단의 결과를 분석하여 임직원이 매일 접속하는 출·퇴근 등록창에 게시하는 **청렴도 자가진단으로 청렴수준측정**,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팀·부서별 반부패·청렴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청렴실천과제>

시기	청렴 실천과제	근거 (임직원 행동강령)
7월	알선·청탁안하기	제16조 (알선·청탁 등 금지) 제18조 (인사 청탁 등 금지)
8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안하기	제11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9월	직무권한자 등에게 금품 등 받지 않기	제16조 (금품등의 수수 제한)
10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안하기	제5조 (차별대우 금지)
11월	예산의 복식 외 사용 안하기	제9조 (예산의 복식 외 사용 금지)
12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결성 안하기	제28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계약서, 과업지시서 부패영향평가 실시

우리 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에 따른 불공정요인을 제거 개선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난 3. 10 ~ 3. 21(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에는 임대광고 관련 계약과 1년 이상의 장기용역 사업 총 27건으로, 본사 사옥 임대차 계약 등 9건의 계약서와 본사 사옥 특수경비 용역 등 18건의 과업지시서가 해당됩니다..

평가결과는 총 23건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86개 조문 수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도한 재량권행사, 계약내용의 불확실성에 관한 사항으로 차후 각 부서에서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실태 특별감사

열차안전운행확보와 자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실태 특별감사를 지난 5.26~6.13(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특별감사는 공사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 및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자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 것으로,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의 관리상태와 운용시스템, 자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법령 사규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각 부서 물품 관리상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물품 총괄 부서 담당자와 함께 현장실사를 병행 하였습니다.

자산의 세부 관리상태에 있어서 직원들의 성실한 점검 및 보수 등에 의해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현장 점검 시 일부부서의 자재 정리 정돈 미흡, 청소불량, 고장 등의 미흡사항 총 30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공사자산의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팀에 관리 철저를 교육하고 아울러 자산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간 내 지적사항 전부를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히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열차안전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영목표 달성의 제반여건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청렴조직문화 정착, 윤리경영확산을 위하여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가점을,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감점을 적용하는 종합 마일리지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 청렴마일리지 운영결과 미흡한 점을 반영하여 청렴활동의 자발성 향상 및 청렴도 관심제고와 균형 잡힌 청렴활동 유도를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조정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활동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올해의 청렴인' 시상과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결과를 자체경영평가 가점 지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올해 초 통보된 「2014년도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운영개요 >

- ▲ 적용기간 : '13. 12. 1 ~ '14. 11. 30(12개월)
- ▲ 대 상 : 팀장 이하 전 직원
- ▲ 평가항목 : 가·감점 5개 분야 총 19개 항목

◆ 청렴마일리지(자체경영평가 가점지표)

- ▶ 청렴마일리지 팀 점수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 70%순위별 가점

구분	1~2위	3~4위	5~7위	8~10위	11~13위	14~15위
가점	0.30	0.25	0.20	0.15	0.10	0.05

- ▶ 14년도 창의 및 청렴마일리지 평가결과를 7:3비율 반영

※ 청렴마일리지 점수합산 제외항목 : 청렴교육, 청렴제안, 청렴자료 게시

하반기 감사활동은?

1. 기강점검

하반기에는 하계휴가철과 추석명절이 있어서 자칫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팀에서 특별 기강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계휴가철 특별점검 : 2014. 7월 ~ 8월
- 추석명절 특별점검 : 2014. 8월 ~ 9월
- 연말연시 복무점검 : 2014. 12월~

2. 일반감사

하반기에 일반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4. 10월 중
- 대상 : 종합관제팀, 기술지원처, 차량운영처

7월 청렴 실천과제

"알선 · 청탁 안하기"

내·외부 신고시스템 안내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청탁등록시스템, 윤리 감사상담실, 우편신문고제도 운영, 부패·공익신고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실적이 없어, 우리 공사 내부신고센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내·외부 신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분야에 대한 궁금증 및 신고사항 발생 시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는 공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탁등록센터

- ▲ 접근방법 : smart 게시판 ⇒ 청렴마당 ⇒ 청탁등록센터
- ▲ 신고자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사 직원
- ▲ 신고대상자 : 공사 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 ▲ 신고내용 : 알선·청탁과 관련된 부패행위

2) 윤리·감사상담실

- ▲ 접근방법 : smart 게시판 ⇒ 청렴마당 ⇒ 윤리·감사상담실
- ▲ 이용대상 : 임직원 누구나
- ▲ 신고내용 (비밀 절대보장)
 - 공사 임직원의 부정 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 감사사항 선정, 자체감사운영과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3) 우편신문고(소통함) 제도 운영

- ▲ 설치목적
 - On-Line 부패신고 부담감 경감을 위한 익명 / Off-Line 방식의 신고 시스템 설치
- ▲ 설치장소 : 본사(4층), 용산·옥동기지(종합관리동 1층 현관)
- ▲ 이용대상 : 임직원 누구나
- ▲ 상담내용 : 공사 임직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등

4) 선물반송센터 운영

- ▲ 운영시기 : 설, 추석명절 전후 7일 이내
 - ※ 연2회, 운영기간 별도 공지
- ▲ 운영장소 : 안전감사실 감사팀(본사 4층)
- ▲ 신고대상 :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현금,상품권 포함)
- ▲ 운영절차 : 신고 서식 → 접수(감사팀) → 선물반송

5) 부패·공익신고센터

- ▲ 접근방법 : 홈페이지(www.gwangjusubway.co.kr)
- ☞ 나눔·윤리도시철도 → 신고센터
- ① 부패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임직원 부패행위
- ② 공익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처리절차 : 신고접수 및 사실 확인 → 공익신고의 승부 (조사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송부사실 통지 → 조사 결과 통보의 접수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됨.

6) 그 외 신고제도

-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 대기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시(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
- ▲ 골프행위 사전신고
 - :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행위 시(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